

제17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1. 12. 7.)

2012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
[검토 보고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노해

<의안번호 제2011 - 86호>

2012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1. 11. 24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1. 11. 24

2. 제안이유

- 거창승강기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내년도 소요예산이 70억원으로 국비 20억원을 제외한 자체재원 50억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군재정 여건상 재원부족으로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
- 지방채 50억원은 대부분 보상비로, 보상비가 어느정도 진행되면 실소유자 개발방법도 강구해서 추가 지방채 발행 최소화

3. 주요내용

- 지방채 발행 계획

발행액(원)	차입선	연리	상환기간	상환재원	발행방법	발행시기
5,000,000,000	기타(은행)	4.32%정도	2년거치 3년상환	분양대금	증서차입	2012년도 상반기

○ 사업비 확보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총 사업비	확 보 액				'12년도확보예정액				기 투자 액	향 후 투자 액	비 고
		계	재 원 별			계	재 원 별					
			국비 (광특)	도비	기타		국비 (광특)	도비	기타			
거창승강 기 전 문 농공단지	32,000	4,013	2,100	458	1,455	7,000	2,000		5,000	4,013	20,987	

○ 지방채 계획(2012년)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지방채승인액			지방채차입액			지방채상환액				
	계	재 원 별		계	재 원 별		계	재 원 별			
		은행			은행			기타			
거창승강 기전문농 공단지	5,000	5,000		5,000	5,000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24조
- 지방재정법 제11조 내지 제14조 및 제44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2조

5. 검토결과

- 거창승강기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남상면 대산리, 월평리 일원에 320,280㎡(분양 200,064㎡)를 2009년부터 2014년까지 320억원(국비 88.95, 도비 4.84, 군비 14.55, 자부담 211.66)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대형사업으로서 승강기 관련 업종의 집적화를 통해 승강기산업의 허브로 육성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크게 기대하고 있음.

- 2012년도 사업비 소요예산이 70억원으로 국비 20억원을 제외한 자체재원 50억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군재정 여건상 재원부족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고자 하는 것으로
- 우리 군의 2012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15억원으로 발행금액이 한도액 이내이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되어 법령에 적합하며 지방채 50억원은 대부분 보상비로 사용할 계획임.
- 다만, 지방채 발행 계획에서 연리 4.32%와 상환기간 2년거치 3년 상환 계획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 우리 군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1.10.15] [법률 제10827호, 2011. 7.14, 일부개정]

제124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11.10.26] [법률 제10898호, 2011. 7.25, 타법개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이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관계 있는 사업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장은 그 조합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5.11, 2008.2.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는 조합과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제12조(지방채발행의 절차)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불,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1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중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이하 "지방채증권"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79조·제484조·제485조 및 제4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의 규정 중 "사채"는 "지방채증권"으로, "사채권자"는 "지방채권자"로, "채권"은 "증권"으로 보고, 제479조중 "기명사채"는 "기명지방채증권"으로, "사채원부"는 "지방채증권원부"로, "회사"는 "지방자치단체"로 각각 본다.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그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의 범위(이하 "주채무"라 한다)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

무보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변경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당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일시차입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계상된 범위 안의 지출을 위하여 일시차입금이 필요한 때에는 그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1. 9. 9] [대통령령 제23121호, 2011. 9. 6, 일부개정]

제7조(지방채의 종류)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채증권 :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차입금 : 지방자치단체가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정부·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차관(현물차관을 포함한다)을 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조(지방채증권 발행의 특례) ①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증권

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지방채증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가 외국에서 지방채증권을 발행하거나 국내에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방채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하며, 환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채의 발행대상)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공공용시설의 설치
2.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4.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5. 기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6.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라도 총사업비가 제41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 미만일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청사정비기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지방채의 발행액. 다만, 「지방

공기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의 발행액을 제외한다.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3.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액

4. 그 밖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규모, 채무상환일정 등 재정상황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경제자유구역 행정기구(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에 한한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에 따라 정한 지방채발행 한도액 외에 지방채발행 추가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7.6.28, 2008.2.29, 2009.7.30>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과 다른 자료의 제출로 과도하게 한도액을 받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축소·조정하거나 지방채발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6.28, 2008.2.29>

제11조(지방채발행의 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7월 15일까지 다음 연도 지방자치단체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다음 연도에 법 제11조제2항 단서·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지방채발행계획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의 지방채발행 계획안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월 31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

다. <개정 2008.2.29>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회계연도 중에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2조(지방채인수의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연도에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및 기금, 청사정비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의 지방채발행 계획안은 시·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 등과 협의하여 10월 31일까지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시·군 및 자치구가 다음 연도에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7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